

부산광역시체육회  
순수단체종목 성과훈련비 지급 규정



# 부산광역시체육회 순수단체종목 성과훈련비 지급 규정

제정 2021.06.23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부산광역시 대표로 전국체육대회 순수단체종목에 참가하여 성적을 거둔 팀에 대해 성과훈련비(이하 “성과훈련비”라 한다)를 지급함에 있어 효율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급대상)** ① 순수단체종목이라 함은 단체전만 하는 종목을 말한다.  
② 성과훈련비 지급대상은 전국체육대회 순수단체종목에 참가하여 성적을 거둔 부산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팀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로 한다.

**제3조(지급기준)** 제2조의 대상에 대한 성과훈련비 지급기준은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당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**제4조(지급시기)** 성과훈련비의 지급 시기는 해당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거둔 성적을 기준으로 차기년도에 지급한다.

**제5조(제외대상)** ① 정책종목 지원학교 등 체육회 정책에 따라 육성중인 학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성적을 거두었더라도 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  
② 성과훈련비 지원대상 학교라 하더라도 대상학교 사정상 지원이 어려울 경우 해당종목 회원종목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급방법)** ① 성과훈련비 지원기준에 따라 책정된 지급액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, 지급된 성과훈련비는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각종 전국대회 출전비, 강화훈련비, 장비구입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 
②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,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적정비율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집행기간 및 정산)** ① 대상학교의 집행기간은 성과훈련비 지급년도 전국체육대회 참가 전까지로 하며, 정산은 전국체육대회 참가 익월 말일까지로 한다.

② 대상학교의 연초 사업계획에서 사용목적 및 사용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**제8조(시행세칙)**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제정·운용 할 수 있으며,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·시행한다.

## **부 칙(2021.06.23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